

년 월 일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인)

5.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7分)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지난 第53回 臨時會 會期時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곧바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네, 兪相根委員님 말씀하시지요.

○兪相根委員 먼저번에 이 案件은 전부 質疑를 했고 答辯까지 듣고 한 事項이기 때문에 더 質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提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지난 번에 우리가 質疑와 答辯을 다 들은 것입니다. 지난 번에 日程 調整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 會期로 留保를 시킨 것입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국유공단체에대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委員長 朴尙東 다음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